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31
----------	----

2018. 9. 19.(수)  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이수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8년 8월 28일

다. 회부일자 : 2018년 8월 31일

라. 상정일자 : 2018년 9월 6일

(제36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이수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이 타 조례에 명시된 우대내용과 상이하  
여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일원화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 
개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병역명문가 우대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5조)

-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함.

### ○ 기타 조문 수정(안 제6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

### (건설환경소방수석전문위원 김병준)

#### 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현행 조례의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중 주차요금관련 조항이 타 조례와 맞지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#### 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현행 조례 제5조(우대) 중 주차요금 50퍼센트 감면하도록<sup>1)</sup> 규정하고

---

1) 제5조(우대) ①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8>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8> ③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 <개정 2013. 6. 28> ④ 병역명문가 가족으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6. 28>

있지만 「충청북도청사부설주차장 운영 조례」 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<sup>2)</sup> 주차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운영의 혼란과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,

○ 현행 조례 제5조제2항(도청주차장 이용 관련) 및 제3항(청남대 입장료 관련)으로 구분되어 있는 우대사항은 안 제5조제2항으로 변경하여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시설물의 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해줄 수 있는 조항으로 통합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○ 입법예고('18. 8. 14.~'18. 8. 19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, 입법예고결과 특이사항은 없음.

#### 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○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## 라. 검토의견

○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결과, 현행 조례의 병역명문가 우대사항 중 주차요금관련 조항이 타 조례와 맞지않아 혼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통일하여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
---

2) 제5조(주차요금의 감면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. <개정 2012. 7. 16> 1. ~ 6. <생략> 7. 병무청장이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충청북도민의 차량 8. ~ 9. <생략> ② ~ ④ <생략>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

제5조제3항을 삭제한다.

제6조 중 “조례”를 “조례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      행	개           정           안
<p>제5조(우대) ① (생   략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가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③ <u>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청남대 등 도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④ (생   략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우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도지사는 병역명문가 가족이 도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·입장료 ·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.</u></p> <p><u>&lt;삭   제&gt;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6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의</u> ----- -----.</p>